

#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3월 19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 제안이유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안정된 경제·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원센터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공장으로 정함.(안 제3조)
- 다. 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지원센터에는 관내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생산 활동 가능장애인으로 고용하되, 100분의 40 범위에서 비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지원센터 책임자의 채용, 고용 장애인의 급여, 수익금의 사용범위 등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 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원의 확보, 사용재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시설물에 대한 보존책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명령이나 처분의 준수 등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사. 수탁자가 의무사항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시설명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작업장, 목욕탕, 취업지원 기능을 하는 종합적인 시설이므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로 정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과 상충됨. 장애인재활작업장이 타당할 것 같은데?	○ 작업장이 주기능이나 취업지원 등 부기능 역할도 할 계획임.
○ 조례안 3조에서 센터업종을 도시형 공장으로 정한 것은 작업장으로서 기능이라 보는데?	○ 목욕탕 운영, 취업지원 등 부기능도 수행할 계획임.
○ 제명을 센터에서 작업장으로 수정해도 문제없나?	○ 목욕탕이 문제다.
○ 목욕탕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는가?	○ 가능함.
○ 제6조에서 고용대상 장애인 비율이 상위법 상치되는 이유는?	○ 생산성 있는 시설로 운영코자 비율을 조정했음.
○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가?	○ 수익성을 갖춘 생산적인 시설로 운영하기 위함.
○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 성남, 안양시 등에서도 장애인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모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법에서 수입금 사용범위를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서 그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li> <li>○ 입법예고 기간중 시민의견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함.</li> <li>○ 고용대상 장애인 비율을 50%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li> </ul>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2
의결 연월일	2007. 3. 22

제안년월일 : 2007. 3. 19.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시설이 장애인중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작업시설(작업장) 이나, ‘장애인재활지원센터’라는 시설명은 그 기능에 있어 모든 장애인 재활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복합시설로 비쳐지고 있어 제명을 수정함.
- 근로장애인 비율과 수익금 사용범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이 상위법과 상충되고 있으므로 근로장애인 비율과 수익금 사용범위를 수정함.

## 2. 주요골자

- 제명을 시설기능에 적합한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정함.
- 시설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각 조항의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함.(안 제1조내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내지 제14조)
- 고용대상 장애인중 비장애인 채용범위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6조)
- 수익금을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남은 수익금도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안 제9조)

##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중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한다.

안 제1조중 “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한다.

안 제2조중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을 “장애인재활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안 제3조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이라 한다.

안 제4조 제①항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하며, 제②항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을”으로 한다.

안 제6조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하고, “6월”을 “6개월”로 하며,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안 제7조 제①항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하고, “지원센터책임자(이하 ”지원센터장“이라 한다)”를 “작업장책임자”로 하며, 제②항중 “지원센터장은”을 “작업장책임자는”으로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한다.

안 제9조 제①항중 “”지원센터의 고용인 및 직원의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②항중 ”당해 고용장애인과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를 ”작업장 고용장애인“으로 한다.

안 제10조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한다.

안 제11조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한다.

안 제13조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으로 한다.

안 제14조중 “지원센터”를 “작업장을”으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동일함.』

## 신·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u>작업장</u>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작업장</u> ----- ----- -----.
제2조(위치)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u>작업장(이하“작업장”이라 한다)</u> 은----- -----.
제3조(업종) 지원센터의 업종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서 한다.	제3조(업종) <u>작업장</u> ----- -----.
제4조(운영의 위탁) 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공익법인·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u>작업장</u>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 <u>작업장을</u> ----- -----.
③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안과 같음)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조례안과 같음)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지원센터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관내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u>작업장</u> ----- ----- <u>6개월</u> ----- ----- ----- <u>100분의 30</u> ----- -----.

조 례 안	수 정 안
<p>제7조(직원) ①수탁자는 <u>지원센터</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u>지원센터 책임자</u>(이하 “<u>지원센터장</u>”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p> <p>②<u>지원센터장</u>은 <u>지원센터</u>의 경영과 장애인의 관리 등 <u>지원센터</u>의 운영을 총괄한다.</p> <p>제8조(급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장애인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p> <p>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수익금을 <u>지원센터</u>의 고용인 및 직원의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고용장애인과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7조(직원) ①-----<u>작업장</u>----- -----<u>작업장 책임자</u>----- ----- ----- -----<u>작업장 책임자</u>----- -----</p> <p>제8조(급여) (조례안과 같음)</p> <p>제9조(수익금의 사용)①----- <u>작업장</u>의 근로장애인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 ②----- <u>작업장 고용장애인의</u>----- -----</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u>지원센터</u>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②수탁자는 <u>지원센터</u>의 사용재산을 <u>지원센터</u>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p> <p>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사용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p> <p>④수탁자는 <u>지원센터</u>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⑤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승인)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u>지원센터</u>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u>작업장</u>----- ----- ----- ②-----<u>작업장</u>-----<u>작업장</u>----- ----- ③(조례안과 같음) ④(조례안과 같음) ⑤(조례안과 같음)</p> <p>제11조(승인)①(조례안과 같음)</p> <p>1. <u>작업장</u>-----</p>

조 례 안	수 정 안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	2. (조례안과 같음)
3.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u>작업장</u> ----- -----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조례안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5. (조례안과 같음)
제12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1. (조례안과 같음)
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u>작업장</u> -----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조례안과 같음)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감독)①--- <u>작업장</u> ----- -----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 ----- -----.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1. (조례안과 같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조례안과 같음)
3. 수탁자가 <u>지원센터</u> 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 <u>작업장을</u> ----- -----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조례안과 같음)
5. 공익상 <u>지원센터</u> 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 <u>작업장을</u> -----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b>부 칙</b>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안과 같음)

[수정안 포함]

##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 “작업장”라 한다)는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둔다.

제3조(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공익법인·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생산

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7조(직원)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작업장 책임자는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의 관리 등 작업장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8조(급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장애인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수익금을 작업장의 근로장애인 급여와 시설운영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사용재산과 시설물에 대한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승인)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